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기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99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1.

발 의 자 : 김기현 · 김희정 · 권영진
이소희 · 김상훈 · 김용태
김승수 · 김은혜 · 고동진
엄태영 · 배준영 · 김태규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하고,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세제 감면, 공공구매 우대,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현행 인증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인증이 유지되고 있으며, 정부 지원도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함.

이에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등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소하고, 재인증에 제한을 두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(안 제22조의5).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5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1호”를 “제1호 및 제4호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을 받을 수 없다.

1. 제2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인증이 취소된 자 또는 이와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인증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2.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취소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의5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2조의5(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) ①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2조제8호 및 제22조의2(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정한다)의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. <단서 신설>	제22조의5(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을 받을 수 없다.
<신설>	1. 제2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인증이 취소된 자 또는 이와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인증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<신설>	2.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<u>제1호</u>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 ③ ~ ⑥ (생략)	<u>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u>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. -----<u>제1호 및 제4호</u>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</u> ③ ~ ⑥ (현행과 같음)
--	---